



산림·전통의·40의

교회



공직선거법

지킴시다!!

교회에서!!

교인이 출마했을 경우

- ◇ 출마 사실만 단순히 공지하는 것은 가능
- ◆ 경력, 사회활동 등 자세한 내용 공지는 금지
- ◇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·간증하는 것은 가능
- ◆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하여 기도·간증하는 것은 금지

교회에 교인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

- ◆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,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금지

예배나 모임 때

- ◇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, 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가능
- ◆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, 회중이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끼는 모든 행위 금지

선거법 위반 신고
국번없이 1390
 - 촬영·녹음 대환영 -

후보자가!!

출석하는 교회에서

- ◇ 평소 때처럼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
- ◆ 인사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,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 금지
- ◇ 평소 수준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가능
- ◆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
- ◇ (예비후보자) 교회 건물, 부속 토지, 담장 밖에서 선거운동 가능
- ◆ (예비후보자) 교회 건물, 부속 토지, 담장 안에서 선거운동 금지

출석하지 않는 교회를 방문할 때

- ◇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
- ◆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모든 행위는 금지
- ◇ (예비후보자) 교회 건물, 부속 토지, 담장 밖에서 선거운동 가능
- ◆ (예비후보자) 교회 건물, 부속 토지, 담장 안에서 선거운동 금지

기독교윤리실천운동